

9. 연구소규정준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..을 위하여 설치된」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부설 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예시 : 이 규정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의 이론 및 실천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부설 사회복지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
2.
-
- . 기타,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(사항)

제3조(각부) ① 연구소에 ○○부, ○○부, ○○부 ... 「○○실」을 둔다.

② 각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○○부는 ...에 관한 사항
2. ○○부는 ...에 관한 사항
-
-

제4조(연구원) ① 연구소에는 3인 이상의 연구원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 연구보조원은 (...자격과 절차설명...)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원)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연구소장 : 1명
2. 부소장 : 1명
3. 감사 : ○명
4. 각부, 「실」장 : 약간명
5. 간사 : ○명

②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③ 각부 「실」장은 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각부 「실」장은 각부 「실」의 업무를 관장한다.

④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○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본부 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임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
2. 내규의 제정 및 개폐
3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4. 연구계약체결
5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6. 연구원,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
7. 기타,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보고) ① 연구소장은 교무입학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1. 연구소 운영 보고서(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) - 다음해 3월말까지
2.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 1월말까지
4. 연구계약체결현황,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- 수시

② 전항 2호 및 3호의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재정) ①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, 기부금,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 참고사항

1. 「 」안의 사항은 삽입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.
2. 연구소규정은 본 대학교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칙에 제시된 조 혹은 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첨가할 수 있음.
3.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“임명한다” 대신에 “위촉한다” 라고 함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